

#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03일  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박 석, 박영한, 박환희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영희, 윤종복, 이민석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한 신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 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
- 이에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및 라돈저감공법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 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를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라돈저감공법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3. “라돈저감공법”이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설치(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에 사용하는 라돈저감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라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)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토양배기법
2. 외부공기 유입법
3. 차폐법(라돈 차폐용 도료)

4. 그 밖에 시장이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법

②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 번호

2023071800000006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김태수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류동균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3.07.18.

회신일 : 2023.07.1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###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안 제6조 라돈저감 공법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 등에따라 비용이 발생하나, 객관적 비용 추계는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
(제3조 제1항 제2호)

-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서울시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민원 등에 따라 안 제5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를 규정하고, 안 제6조 라돈저감공법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여 향후 예산지출이 예상됨
- 다만 제3조(적용범위)에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적용범위로 정하였는데, 최근 건축경기 급변 상황에서 향후 대상 시설의 신축은 물론 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 대상 물량의 예측, 제5조 제1항 다양한 공법과 당해 공법의 적용 정도, 제6조(재정지원)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의 선택에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,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예산분석팀장	이정수
분석관(주무관)	류동균
	☎ 02-2180-7952
	e-mail : rooster72@seoul.go.kr